

#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1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3. 12. 23.  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2003. 7. 1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담당업무가 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에서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로 변경됨에 따라 노인복지기금 회계관계공무원을 변경하고자 함

## 2. 주요골자

- 사하구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용·관리를 위한 기금출납원을 가정복지업무 담당주사에서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함.(안 제12조제1항제2호)

## 3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133조, 지방재정법 제110조, 노인복지법 제4조

##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제2호중 “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”를 “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#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기금관리 공무원)①(생략) 1. (생략) 2. 기금출납원 : <u>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</u> ②(생략)</p>	<p>제12조(기금관리 공무원)①(현행과같음) 1. (현행과같음) 2. ----- : <u>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</u> ②(현행과같음)</p>